> 고객의 소리 > FAQ

FAQ

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였습니다.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Q&A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제목 검색

지식경제부지원사업 / 중소기업청지원사업 / 기타지원사업 / 처음왔어요!궁금해요
2009년도 산업원천설명회 질의 모음 /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규정에 대한 질의 모음

번호	질문	조회수	등록일
	사업계획서 작성 샘플 공지	1931	2011-03-10
69	**참여율**	626	2011-09-08

1. 작년 「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 때 반영된 "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"에 대해 지식경제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아래와 같이 유사한 규정으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.

○ 규정 내용이 의미상 같으나, 지식경제부 규정은 인건비의 기본인 "참여율"을 기준으로 동시 수행 과제수 상한선이 자동으로 정해지며, 교육과학기술부는 "과제수(책임자로 3개, 참여연구원으로 5개)"로 설정한 것이 차이점입니다.

○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R&D 규정이 다소 상이한 점이 있음을 먼저 알려 드리오니, 관련 사업 관리 시 반드시 해당 과제가 교과부 규정을 적용하는 지, 아니면 지경부 규정을 적용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. 기술개발사업에서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, 이때 참여율은 10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(이 부분은 공동 규정임)

3. 현행 지식경제부 R&D 사업 규정에서는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(세부과제의 세부주관책임자 포함)는 신청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%(총괄과제의 총괄주관책임자는 10%)이상, 참여연구원은 10%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

○ 본 규정에 의거 지식경제부 R&D 사업에서는 총괄책임자로 R&D 과제를 신청할 경우 3개가 한도가 되겠습니다.

○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 공고 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할 경우 규정상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 청과제의 참여연구원(총괄책임자도 참여연구원으로 간주되며, 참여기관 책임자 및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일반 연구원도 포함됨)이 사업 공고 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를 본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5개 초과하여 수행하는 경우 및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%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규정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○ 사업 공고 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및 총 수행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
○ 학생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면 '참여연구원'으로 간주됩니다.

○ 현행 지경부 R&D 사업의 협약주체에 '위탁기관'이 빠져 있음으로, 참여연구원의 동시 수행 제한인 5개를 계산할 때에는 '위탁과제'를 제외합니다.

보다 상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Q&A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Q&A 바로가기 | 인쇄

68	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안내	2530	2010-06-21

67	2010년 개정된 규정 관련 주요 질의사항(회의비, 식대, 인건비, 특수관계자와의 거래, 주요 규정개정 내용)	2447	2010-06-10
66	보고서 열람 안내	715	2010-06-10
65	사사문구 안내	1451	2010-04-27
64	기술료, 참여제한 등	1946	2010-01-14
63	보고서 작성 및 평가	1273	2010-01-13
62	협약	912	2010-01-06
61	사업비 계상	1850	2010-01-06
60	주요 용어 해설 등	905	2010-01-06

1 2 3 4 5 6 7

제목 검색